

재해영향성검토 용역  
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 
《작성요령포함》

2022. 11.

국 토 교 통 부  
철 도 건 설 과

## I. 과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지침

### 1. 작성지침 성격

본 지침은 철도건설과에서 시행 예정인 재해영향성검토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(고시금액미만의 용역 적격심사)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 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.

### 2.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대상 사업

| 용역명             | 용역사업<br>주요내용 | 용역금액(원)    | 용역예정<br>기간(개월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수색~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| 재해영향성 검토 1식  | 43,000,000 | 12             |    |

### 3. 낙찰자 선정방법

#### 가. 입찰참가 자격기준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등록한 자이며,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. 다만,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### 나. 낙찰자 선정방법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 및 「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(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, '18.1.4.)」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

### 4. 과업내용 : 별도의 “(용역설계서)과업지시서”에 의함

## II.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

### 1. 개 요

본 평가기준은 철도건설과에서 시행 예정인 재해영향성검토용역 사업

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.

## 2.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방법

재해영향성검토용역 낙찰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가계약법”이라 한다) 시행령 제42조제1항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,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, 「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(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, '18.1.4.)」에 따라 우리 과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세부사항은 Ⅲ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.

## 3. 평가의 기본 원칙

가.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「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(국토교통부훈령 제956호, '18.1.4.)」에 의한다.

나.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**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** 하고,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다. 적격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, 제출 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해 관련협의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으며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
라. 평가자료 제출한 서류를 위조, 변조,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.

- 1)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.
- 2)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마.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(평가대상)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,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,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. 다만, 퇴직·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

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·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, 반드시 우리 과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,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.

바. 적격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.

사.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.

아.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계약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#### 4. 평가위원회 구성

가. 적격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

나.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- 1)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시
- 2)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
- 3) 기타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다.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,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,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
#### 6.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

가.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며,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기재 되어있지

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
나.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(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)에 따르며, 유사용역수행실적, 경영상태, 업무중첩도,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,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다. 적격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(원본1, 부분1)에 편철하여 제출해야하며,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
### Ⅲ. 세부평가기준

#### 1.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

가. 일반사항

1) 참여자격 :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.

| 구 분      | 기술자격 요건 |          | 필수 교육 이수자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| 사업책임기술인 | 분야별책임기술인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재해영향성 검토 | 특급      | 고급       | 사업책임기술인,<br>분야별책임기술인 |    |

2) 경력 및 실적인정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－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” 상 주요경력/참여기간(인정일) 중 “인정일”로 계산한다.

3)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

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발주처, 사업명, 직무분야, 해당 전문분야,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처,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·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
4) 사기업(私企業)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
5)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**평가대상 사업은 전체 준공한 용역사업으로 한정한다.**(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)

6) 평가대상 기술인

| 순 번 | 용 역     | 평가대상기술인(인) |       |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   | 계          | 책 임   | 분 야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수자원개발 | 토질지질 |                       |
| 1   | 재해영향성검토 | 2          | 1     | 1    | 책임기술인과 분야기술인 분야 중복 불가 |

나.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

1)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(제4조 관련)의 기준에 따라 자격은 직무 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며, 등급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.

| 구 분   |      |                |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인 원 수 |      |                | 각 1인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참여분야  |      |                | 수자원개발, 토질지질                 |    |
| 자격    | 직무분야 | 토목             | 사업책임 : 특급이상<br>분야별책임 : 고급이상 |    |
| 등급    | 전문분야 | 수자원개발,<br>토질지질 | 배점표에 따라 차등평가                |    |

다.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

1)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

2)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

| 용역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참 여 분 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·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방재 관리대책업무 및 용역 | · 용역수행 경력<br>·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| 100% |
| · 설계*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             | · 용역수행 경력<br>·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| 80%  |

\* 국토교통부(지방국토관리청, 지방항공청 이하 “국토교통부”라 한다)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새만금개발청, 광역자치단체, 한국도로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

3)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한 후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평가경력 연수(年數)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

## 라.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

1)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

2)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

| 용역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참 여 분 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·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방재 관리대책업무 및 용역 | · 용역수행 경력<br>·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| 100% |
| · 설계*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             | · 용역수행 경력<br>·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| 80%  |

\* 국토교통부(지방국토관리청, 지방항공청 이하 “국토교통부”라 한다)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새만금개발청, 광역자치단체, 한국도로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

3) 각각의 실적일수를 합산한 후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며 평가실적 월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

## 2.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(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)

가. 유사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방재관리대책업무(재해영향성검토, 재해영향평가,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,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, 우수 유출저감대책 수립, 재해복구사업의 분석·평가, 비상대처계획 수립)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.(공고일 기준 전체분에 대하여 준공되지 않은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)

나. 유사용역의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(건수 및 금액)은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.

다. 사기업(私企業)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
### 3. 경영상태 평가(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)

- 가.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“기업경영분석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. 다만,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.
- 나.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“기업경영분석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.

### 4. 용역업무 중복도

- 가. 용역업무 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이상인 모든 용역(비상주 감리 제외)을 대상으로 평가하며, 평가대상인 사업 책임기술인 1인,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 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에 따라 아래의 배점기준에 의해 평가하며, 잔여과업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기간을 산정한다. ※ 1개월은 30일로 계산

| 1년(12개월)이하 | 1년(12개월)초과<br>2년(24개월)이하 | 2년(24개월)초과<br>3년(36개월)이하 | 3년(36개월)초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건         | 2건                       | 3건                       | 4건         |

- 나.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인이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하며, 관련기관(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)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최저 점수로 처리한다.

### 5. 신용도

- 가. 입찰참가 제한기간

#### 1) 용역업자

최근 1년간(공고일 기준)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(30일)마다 배점의 10%씩 감점한다.(1월 이상 30일 이하 : -0.2, 31일 이상 60일 이하 : -0.4, ...)

## 2) 참여기술인

최근 1년간(공고일 기준) 관계법령에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(90일)마다 10%씩 감점한다.(1일 이상 90일 이하 : -0.2, 91일 이상 180일 이하 : -0.4, ...)

## 6. 재해영향성검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평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기준 | 평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참여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| ○ 자격<br>-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| 25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기술인등급<br>(수자원 개발)              | (7)  | 특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급      | 중급     | 초급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| 3      | 0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8)  | 12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이상   | 8년이상   | 6년이상   | 6년미만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| 4      | 2      | 0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용역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0) | 120개월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8개월이상 | 96개월이상 | 84개월이상 | 84개월미만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   | 6      | 4      | 2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| 25   | - 사업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기술인등급<br>(토질 및 지질)             | (7)  | 고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급      |        | 초급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|        | 3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8)  | 9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년이상    | 5년이상   |        | 5년미만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| 4      |        | 2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용역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0) | 84개월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2개월이상  | 60개월이상 |        | 60개월미만 |
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|        | 4      |        |
| 유사용역수행실적<br>(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) | - 용역업자수행실적                      | 34   | -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용역수행 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| (17) | 6건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건이상    | 2건이상   | 2건미만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      | 9      | 5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용역수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(17) | 3억원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억원이상   | 1억원이상  | 1억원미만  |        |
| 17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       | 5      |        |        |
| 경영상태<br>(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)     | - 경영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| 34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<br>(자기자본/총자산)/ 기준비율 | (17) | 100%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0%이상   | 80%이상  | 70%이상  | 70%미만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  | 13     | 11     | 9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최근년도유동비율<br>(유동자산/유동부채)/ 기준비율  | (17) | 100%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0%이상   | 80%이상  | 70%이상  | 70%미만  |
| 17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      | 11     | 9      |        |
| 용역업무중복정도                    | - 용역업무 중복도                      | 12   | -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용역업무 중복도                       | (12) | 1건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건이하    | 3건이하   | 4건이상   |        |
| 12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   | 0      |        |        |
| 신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신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| -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입찰참가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| (2)  | ·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% 감점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기술인업무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| (2)  | ·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% 감점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
## IV.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

### 1. 용역개요

- 공고문 참조

### 2. 제출서류(제본순서)

-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.

- 1) 표지[서식 1]
- 2) 적격심사신청서[서식 2]
- 3)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[서식 3]
- 3)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
- 4)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[서식 4]
- 5) 참여기술인 총괄[서식 5]
  - \*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(공고일 기준)
- 6) 참여기술인 자격, 경력, 실적[서식 6]
- 7) 참여기술인(사책, 분책, 분참) 경력증명서
- 8)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[서식 7]
- 9) 참여기술인 교육수료증
- 10) 업체의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(5천 이상)[서식 8]
- 11)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
- 13) 경영상태 실적(5천 미만)[서식 9]
- 14)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 등 증빙서류
- 15) 입찰참가자격제한, 업무정지, 기술자격정지 등[서식 10]
- 16) 입찰참가자격제한, 업무정지,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
- 17)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[서식 11]
- 18)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 산출근거[서식 12]

\*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첨부토록 한다.

\*\* 첨부서류 서식5는 엑셀 전산파일(CD 또는 USB 등)로 반드시 제출

### 3.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

가.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.

나. 제출부수 : 2부(원본 1부, 부분 1부), 규격 : A4(210cm × 296cm), 좌철

### 4. 기타사항

가.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과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, 작성안내서 상 각 항목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.

나.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다.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.

라. 모든 자료 작성일은 **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.**

마.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.

바.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, 변조,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)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.

2)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사.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,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.

[서식 1]

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국<br>철 | 토<br>도 | 교<br>건 | 통<br>설 | 부<br>과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
|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|
| 관<br>리<br>번<br>호 |  |
|------------------|--|

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자료  
(용 역 명)

2022. 1.

○ ○ ○ ○(주)

| 담당자 | 직장전화번호       | 긴급연락처        | 팩스(FAX)번호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○○○ | ○○○-○○○-○○○○ | ○○○-○○○-○○○○ | ○○○-○○○-○○○○ |

## 적격심사신청서

- 용역명 :
- 발주기관 :
- 입찰일시 :

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 
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, 만일 제출한 서류가  
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(회계  
예규)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 
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.

입찰자 주소 :  
회사명 : (TEL. )  
대표자 : (인)

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

**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장 귀하**

[서식 3]

##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

### 1. 심사대상용역

|      |  |
|------|--|
| 공고번호 |  |
| 입찰일시 |  |
| 용역명  |  |
| 용역기간 |  |
| 수요기관 |  |
| 입찰금액 |  |
| 예정가격 |  |
| 제출기한 |  |

### 2. 심사대상입찰자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업체명  | (전화)                    |
| 대표자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업종구분 | 건설사업관리( ), 설계( ), 기타( ) |

### 3.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

|      |       |
|------|-------|
| 소속   |       |
| 직위   |       |
| 성명   |       |
| 전화번호 | (Fax) |

### 4. 종합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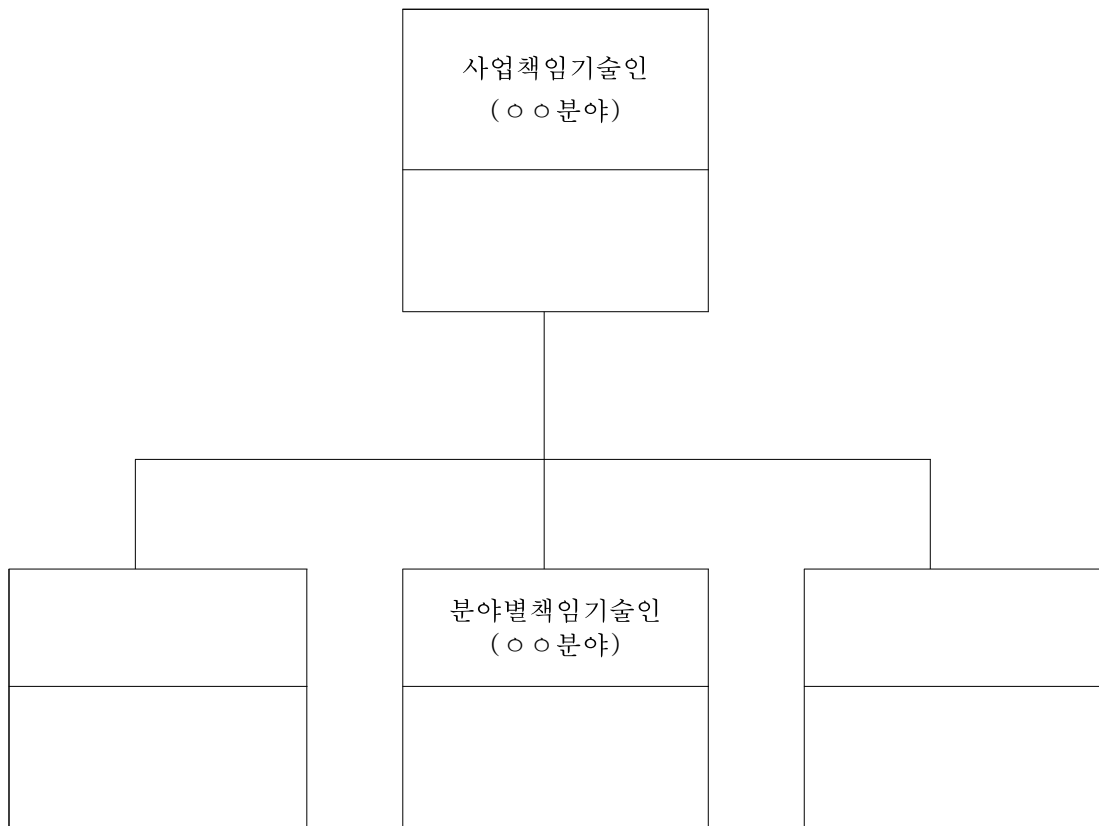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      | 자기평점 | 심사평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     |      |
| 참여기술인(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)          | 50×30/100 |      |      |
| 유사용역수행실적<br>(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) | 34×30/100 |      |      |
| 경영상태<br>(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)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
| 자본비율 :<br>유동비율 :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
| 업무중복정도                      | 12×30/100 |      |      |
| 신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| 4×30/100  |      |      |
| 입찰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| 70        |      |      |
| 결격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| -40       |      |      |

※ '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'에 의한 자기평점 근거 첨부할 것.

※ 수행능력 평점산식 :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

※ 입찰가격 평점산식 :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

##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



## 참여기술인 총괄

| 구 분               |     | 분 야  | 등급 | 주민등록<br>번호 | 자 격 내 용 |       |     | 학 력 내 용    |       | 소 속<br>회 사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| 자 격 명   | 취 득 일 | 번 호 | 최 중<br>학 력 | 취 득 일 |            |     |
| 사 업<br>책 임<br>기술인 | ○○○ | ○○분야 |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|
| 분야별<br>책 임<br>기술인 | ○○○ | ○○분야 |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|

첨부 : 1. 자격증 사본  
2.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.

※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 1인, 분야책임 1인으로 구성하며, 중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.

## 참여기술인 자격, 경력, 실적

### 1. 인적사항 및 등급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성명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소속회사 |            | 주민번호<br>(연령)   | (만 세) |
| 기술등급           | 직무분야                  |      | 전문분야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| － 특급, 고급, 중급, 초급으로 구분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| 자격증<br>(분야및종류)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금회<br>참여분야 |                |       |
| 경력             | 1059일÷365일= 2.9년      |      | 실적         | 840일÷30일= 28개월 |       |
| 자격정지           | 개월(“해당없음”은 표시)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

### 2. 경력

| 연번 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| 구분<br>(해당<br>분야) | 참여기간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환산일수(경력)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발<br>주<br>청 | 직무<br>분야 | 전문<br>분야  | 담당<br>업무 | 해당<br>페이<br>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착수             | 준공             | 인정일<br>(A) | 인정율<br>(%)<br>(B) | 인정<br>기간<br>(C)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| 산정결과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.3년            | 1년=365일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계  | 권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1059            | 1059/365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1  | 00<br>재해영향성검<br>토용역    | 수자<br>원          | 2008.<br>01.01 | 2009.<br>12.31 | 365        | 100%              | 365             | XX<br>국도    | 토목       | 수자원<br>개발 |          | p.171         |
| 2  | 00소하천<br>실시설계용역        | 수자<br>원          | 2009.<br>01.01 | 2010.<br>06.30 | 182        | 80%               | 145.6           | 00시         | 토목       | 수자원<br>개발 |          | p.172         |
| 3  | 00지방하천<br>실시설계용역       | 수자<br>원          | 2010.<br>01.01 | 2011.<br>12.31 | 184        | 60%               | 110.4           | XX<br>국도    | 토목       | 수자원<br>개발 |          | p.173         |
| 4  | 00하천정비<br>기본계획수립<br>용역 | 수자<br>원          | 2011.<br>01.01 | 2012.<br>06.30 | 365        | 60%               | 219             | 00도         | 토목       | 수자원<br>개발 |          | p.174         |

### 3. 실적

| 연번 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| 구분<br>(해당<br>분야) | 참여기간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환산일수(경력)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발<br>주<br>청 | 직무<br>분야 | 전문<br>분야 | 담당<br>업무 | 해당<br>페이<br>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착수             | 준공             | 인정일<br>(A) | 인정율<br>(%)<br>(B) | 인정<br>기간<br>(C)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| 산정결과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.3년            | 1년=365일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계  | 전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1059            | 1059/365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1  | 00<br>재해영향성검<br>토용역    | 토질<br>지질         | 2008.<br>01.01 | 2009.<br>12.31 | 365        | 100%              | 365             | XX<br>국도    | 토목       | 토질<br>지질 |          | p.171         |
| 2  | 00소하천<br>실시설계용역        | 토질<br>지질         | 2009.<br>01.01 | 2010.<br>06.30 | 182        | 80%               | 145.6           | 00시         | 토목       | 토질<br>지질 |          | p.172         |
| 3  | 00지방하천<br>실시설계용역       | 토질<br>지질         | 2010.<br>01.01 | 2011.<br>12.31 | 184        | 60%               | 110.4           | XX<br>국도    | 토목       | 토질<br>지질 |          | p.173         |
| 4  | 00하천정비<br>기본계획수립<br>용역 | 토질<br>지질         | 2011.<br>01.01 | 2012.<br>06.30 | 365        | 60%               | 219             | 00도         | 토목       | 토질<br>지질 |          | p.174         |

### 5. 교육훈련 실적

| 참여기술인        |    | 교육구분 | 교육과정명 | 교육기간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
| 분야           | 성명 |      |       | 시점             | 종점             |      |
| 사업책임<br>기술인  |    |      |       | 2010.<br>01.01 | 2011.<br>12.31 | ( 주) |
|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
| 분야별책임<br>기술인 |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
| 점 수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

##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신 청 인         | 업 체 명 (상호)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 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영 업 소 재 지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사 업 자 번 호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입찰공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증 명 서 용 도             |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 출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용역범위 및 기준<br>(면적,금액등)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용역이행<br>실적내용  | 용 역 명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계(    )<br>건설사업관리(    )<br>기타(    ) :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용 역 개 요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계 약 번 호               | 계약일자          | 계약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규모 | 이행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증 명 서<br>발급기관 | 위 사실을 증명함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   월    일 |
|               | 기 관 명 :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(전화번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주 소 :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(FAX번호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발급부서 :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담당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
※ 작성요령

※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,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※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(면적, 금액등)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,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

※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

##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(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)

| 연번       | 사업명                 | 구분 | 참여기간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발주처      | 실적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지분율      | 적용 실적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<br>(공동<br>도급<br>자명,<br>총준<br>공금액) | 해당<br>페이지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 착수             | 준공             |          | 건수<br>(A) | 준공금액<br>(백만원)<br>(B) | %<br>(C) | 건수<br>(A*C) | 금액<br>(백만원)<br>(B*C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| <b>산정결과</b>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<b>계</b> 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<b>4</b>  | <b>250</b>           |          | <b>3.1</b>  | <b>240</b>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1        | 00<br>재해영향성검토<br>용역 |    | 2008.<br>01.01 | 2009.<br>12.31 | XX<br>국도 | 1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| 100%     | 1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171      |
| 2        | 00소하천<br>실시설계용역     |    | 2009.<br>01.01 | 2010.<br>06.30 | 00시      | 1         | 70                   | 80%      | 0.8         | 56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171      |
| 3        | 00지방하천<br>실시설계용역    |    | 2010.<br>01.01 | 2011.<br>12.31 | XX<br>국도 | 1         | 60                   | 60%      | 0.6         | 36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171      |
| 4        | 00하천정비<br>기본계획수립용역  |    | 2011.<br>01.01 | 2012.<br>06.30 | 00도      | 1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| 60%      | 0.8         | 48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171      |

※ 공공관리주체(발주기관)로부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함

※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

※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하도급은 불인정

※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, 총 준공금액을 기재

※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

※ 국가 및 공공기관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"발주청"을 말함

[서식 9]

**경영상태(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)**

·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

(단위 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---|
| 1. 회 사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|   |
| 2.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|   |
| 3.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|   |
| 4. 설립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|   |
| 5. 자 본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|   |
| 6. 경영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|   |
|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유동비율 |   |
| 자기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유동자산 |   |
| 총 자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유동부채 |   |
|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% | 유동비율 | % |
| <p>○ 자기자본 비율 = 자기자본÷총자산 =</p> <p>○ 유동자산 비율 = 유동자산÷유동부채 =</p> |   |      |   |

※ 증빙서류 첨부 (한국은행 발행 “기업경영평가분석” 사본)

※ 합계(평균)는 총 금액에 대한 연간 평균수치임.

※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

※ 반드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하로 평가함

## **입찰참가자격제한, 업무정지,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[신용도 평가]**

| 구분        | 업 체 명<br>참여기술인 | 처분<br>종류 | 기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사유 | 관계법령 | 처분청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|-----|----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시점             | 종점             | 환산<br>(월) |    |      |     |    |
| 용역<br>업자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2010.<br>06.01 | 2010.<br>08.31 | 3         |    |      |     |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|    |
|           | 계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|    |
| 참여<br>기술인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|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|    |
|           | 계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|     |    |

※ 업체 및 평가대상 기술인은 최근 1년간(공고일기준)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,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.

※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.

※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

※ 첨부서류 :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

##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

| 구분                | 성명 | 용역업무 참여현황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비 고<br>(용역중단<br>여부 등) |
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   | 용역명       | 발주청 | 용역비<br>(백만원) | 참여기간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분야   | 참여<br>기간 | 중복<br>기간 | 중복<br>일수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 업<br>책 임<br>기술인 |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| 계         | 건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분야별<br>책 임<br>기술인 |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| 계         | 건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- ※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(장기계속 등)을 기재
- ※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(30일)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
- ※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, 분야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
- ※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
- ※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
- ※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 첨부

## 자기평가 산출근거

| 평가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평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기준 | 평 가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 점수 |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| ○ 자격<br>-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             | 15    | (예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기술인등급<br>(토목 전문분야)                | (7)   | 특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| 고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고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8)   | 12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| 0.000*1+000*0.8+000*0.6=4,120일<br>4,120/365=11.3년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10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용역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0)  | 84개월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 | 2,872/30=95.7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60개월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| 25    | - 토목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기술인등급<br>(토목 전문분야)                | (7)   | 고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중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8)   | 9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7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용역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0)  | 84개월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60개월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사용역 수행실적<br>(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) | - 용역업자수행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| 34    | -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용역수행 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7)  | 6건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4건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용역수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7)  | 3억원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2억원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영상태<br>(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)      | - 경영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4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<br>(자기자본/총자산)/<br>기준비율 | (17)  | 100%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90%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최근년도유동비율<br>(유동자산/유동부채)/<br>기준비율  | (17)  | 80%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70%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용역업무 중복정도                    | - 용역업무 중복도                         | 12    | -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용역업무 중복도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2)  | 1건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신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 | - 최근 1년 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 사항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입찰참가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2)   | ·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% 감점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기술인업무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2)   | ·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<br>마다 배점의 10% 감점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

- 가.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,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- 나.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“만점”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
- 다.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
(경력의 경우,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,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,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)
- 라.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 
([예시]경력외의 경우,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)
- 마. 자기평가서 내 공란은 파란색으로 채우시기 바람.